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29
----------	-------

발의연월일 : 2026. 5. 20.

발 의 자 : 이종배 · 엄태영 · 이만희
안철수 · 김형동 · 김예지
이달희 · 송석준 · 김은혜
김승수 · 이종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어 연동약정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약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6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자등으로 선정된 자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 금액의 계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8조의5”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8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제3항, 제8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8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제8조의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의5(납품대금 연동 및 하도급대금 연동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조정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p> <p>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p>

